

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- 910호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2월 29일
국토교통부장관

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일부개정 고시

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호바목 중 “제심의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”를 “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 심의”로 한다. (안 8, 별지 제2호서식) (안 2, 5, 7, 9)

제5호 중 “기한이 초과(접수일로부터)”를 “기한(접수일로부터)로, 같은 호 중 “상정)되지”를 “상정)을 초과하지”로 한다.

제7호 중 “받고자하는”을 “받고자 하는”으로 한다.

제8호 중 심의절차의 “심의결과 공개(홈페이지)”를 “심의결과 등록 및 공개 (건축행정시스템 및 홈페이지)”로 한다.

제9호나목 중 “건축사가”를 “건축사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주요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는”을 “주요결과는”으로, 같은 목 중 “따른다”를 “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며,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·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	심의일자	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※ 여러 명인 경우 ○○○외 ○명으로 적습니다.		
대지현황	대지위치		
	지번	관련지번	
	대 지 면 적 m 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
건축물현황	건 축 면 적 m ²	건 폐 율 %	층수 지하 : 층/ 지상 : 층
	주용도	구조	건축물 동수
	최 고 높 이 m	용 적 륜 %	동 연면적 합계 m ²
구 분	주요 심의 내용		
()분야	(검○○) (이○○) (박○○)		
()분야			
()분야			
()분야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
건축위원회 심의기준	근거조문		
	9.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,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. 가. 원안결 :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. 조건부 의결 :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. 재검토 의결 :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. 부결 :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. 단,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. 9.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[별지 제2호]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,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		
작성방법			
1. 심의 결과는 "원안결", "조건부 의결", "재검토 의결" 또는 "부결"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 2. "주요 심의 의견" 란은 개인 식별(이름, 소속 등)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(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, 乙,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)			